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4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53126 취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9. 1. 25.

판 결 선 고 2019.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60,693,520원(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및 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5.경 B산업단지 내의 김포시 C 공장용지 1,71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이 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7. 9. 21. 소속 공무원의 현장 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미착공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4. 10.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53,919,170원(가산세 포함, 이하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같다), 지방교육세 4,516,240원, 농어촌특별세 2,258,110원 합계 60,693,52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자금 마련, 시공업체 선정, 자재값 상승, 적자로 인한 재정난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던 중, 피고가 건축허가사항 변경신고의 수리를 지연하는 바람에 3년의 유예기간을 부득이하게 넘기게 되었다. 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4

러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전기, 전자 수출판매업, 철강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5. 12. 29.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 2동 연면적 합계 1,589.91㎡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16. 1. 14. 허가를 받았다.

3) 그런데 원고는 2017. 1. 16. 공사자금 준비부족을 이유로 착공 연기신청을 하였다.

4) 원고는 2017. 9. 15. 공장 1동 연면적 합계 459㎡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신고를 접수하였는데, D장은 2017. 9. 20. [redacted]소방서장, 피고 종합허가과, E공단 이사장에게 협의 요청을 하였고, 위 공단 이사장이 2017. 10. 25. 협의의견을 송부함에 따라, 2017. 10. 27. 건축허가 변경신고 수리가 이루어졌다.

5)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7. 12. 4.에야 착공신고를 하였고, 다음 날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D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4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겼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한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추징의 장애요건인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자금 준비, 시공업체 선정, 적자 발생으로 인한 재정난은 원고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고, 자재값 상승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착공하지 못한 이유가 될 수도 없는 점, ② 원고는 건축법 제14조 제3항이 건축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통지를 하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4

특별히 협의가 필요한 경우라도 20일 이내에는 처리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관청이 이를 위반하여 2017 10. 27. 비로소 신고를 수리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부득이하게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2017. 4. 18. 신설된 것으로서 부칙(2017. 4. 18. 법률 제14792호) 제1조 본문, 제2조에 의하여 2017. 10. 18. 이후 신고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D장의 수리시에도 유예기간이 28일이 남아 있어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착공신고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예영

판사 조성훈

판사 이서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4

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4

사용하는 경우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제6항 및 제14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부칙(2017. 4. 18. 법률 제147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건축신고 등의 수리여부 및 연장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항, 제16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